

의안번호	제 1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발 의 자	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4월 9일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윤남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
----------	-----

발의연월일 : 2019년 4월 9일

발의자 : 윤남진, 이수완, 김기창,
박병진, 연종석, 오영탁,
황규철

1. 제안이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무궁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지원항목,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협의

라. 입법예고 : '19. 4. 3. ~ '19. 4. 8.(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꽃인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북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무궁화 묘목 나눔 활동
3. 캠페인·사진전·콘테스트
4. 무궁화 교육·홍보
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 보급을 위한 문화 행사
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 공익사업
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및 시상금)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에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무궁화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보급·관리 현황 및 계획
3. 무궁화 품종 보존·연구 및 개발
4. 무궁화 생산기반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
6. 그 밖에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 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지사에게 무궁화 보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절차·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5조의4(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궁화 보급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 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

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궁화 동산·거리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무궁화의 식재·관리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선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 사업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무궁화 보급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식재·보급 및 관리현황
2. 무궁화 생산기반 현황
3. 그 밖에 무궁화진흥계획 및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림청장이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③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통계조사 및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29.]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본조신설 2017. 5. 29.]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무궁화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따른 제비용

3. 관련조문

- 안 제6조 (사업지원)
 - 도지사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무궁화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
- 나. 추계의 전제 : 동산조성, 분화 및 식재지 관리
(11개 시·군 및 연구소) 등, 무궁화 전시 1회

다. 추 계 결 과 : 2019년부터 향후 5년간 세출 1,707백만원 정도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국비 30% 도비 36%, 시군비 34%

※ 무궁화 동산(국비보조사업) 분화 및 식재지 관리 (도비 보조사업),
연구 및 무궁화 전시(자체사업)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 출	1,706,776	326,776	330,000	340,000	350,000	360,000
관리·운영비	1,706,776	326,776	330,000	340,000	350,000	360,000